

**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**(제18조의2제2항 관련)

1. 가동부의 방호
2. 동력취출장치 및 동력입력축의 방호
3. 안전장치
4. 제동장치
5. 운전석 및 그 밖의 작업장소
6. 운전·조작장치
7. 작업기 취부장치 및 연결장치
8. 계기장치
9. 등화장치
10. 고온부의 방호
11. 돌기부 및 예리한 단면 등의 방호
12. 비산물의 방호
13. 축전지의 방호
14. 안정성 관련 장치
15. 작업등
16. 전도 시 운전자 보호장치
17. 안전표시
18. 취급성 관련 장치
19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